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00

발의연월일: 2024. 9. 20.

발 의 자:이강일·정성호·김남희

박희승 • 이성유 • 김우영

이기헌 · 김남근 · 허 영

천하람 • 황운하 • 임미애

강득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개인정보를 직접 침해받은 정보주체만 신고를 할 수 있도록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가 불가능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 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6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1항 중 "개인정보처리자가"를 "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" 로, "침해받은 사람은"을 "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2조(침해 사실의 신고 등) ①	제62조(침해 사실의 신고 등) ①
<u>개인정보처리자가</u> 개인정보를	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
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	
리 또는 이익을 <u>침해받은 사람</u>	<u>침</u> 해
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	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
을 신고할 수 있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